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99. 2. 4

제출자 : 이완영 의원

1. 수정이유

- 조합 운영방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조례에 명기하고
- 기본재산은 운영비와 구분하여 계정토록하여 출연금의 잠식을 방지하도록 함

2. 주요 골자

-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의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 운영토록 함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보증방법, 보증제한업종, 보증기관 및 보증료, 위약금, 보증채무이행, 구상권 행사 등을 기재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 운영토록 함
- 신용조사를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시장여건, 금융기관과의 거래 상황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토록 함.
- 신용정보를 종합관리 하도록 함
-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방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첨”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중소기업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본재산”이라 함은 조합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 출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채무를 조합이 보증함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의 금전채무”라 함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
 - 나. 중소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기타 중소기업의 채무 중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
가 정하는 금전채무

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6. “신용정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 ①조합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이 조례, 규칙,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4조 (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조합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의 출연금

②제1항에 의한 출연금의 범위, 방법, 시기, 기타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출연) ①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조합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 중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정관) ①조합은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제8조 (등기) ①조합은 중소기업청장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 사항은 민법 제49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9조 (업무) 조합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종합관리
4. 구상권의 행사
5. 경영 지도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제10조 (재보증 계약) 조합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그 신용보증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방법서) 조합은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방법, 보증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위약금,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기타 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업무계획) ①조합은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년도 개시 1월전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용조사) 조합이 제9조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하거나 신용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금융기관과의 거래상황, 시장여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정,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①조합은 관계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신용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신용조사 등을 통한 신용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당해업체의 재무구조와 특수성, 동업계 현황 및 일반 경제 동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별 신용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9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원칙) ①조합의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제17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충청북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8조 (이익금의 처리)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과 기본재산의 확충에 사용한다.

제19조 (지방비 보조) 도지사는 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20조 (경영평가)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합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련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보고·검사) ① 도지사는 조합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서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검사와 지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귀속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설립 준비) 도지사는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는 조합의 설립에 관한 제반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 (기금의 출연)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재단법인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